

서울특별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의안번호
3729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6. 6. 15.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3729

I. 변경안 개요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시장

나. 발의일자 : 2026. 05. 26.

다. 회부일자 : 2026. 05. 27.

2. 제안이유

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 자
활계정 2026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
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2026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
수」 금액이 당초 4,606백만원에서 4,740백만원으로 134백만원 증
가함.

나. 서울광역자활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과년도 실집행잔액(발생이
자), 지역자활자금 반납처리 관련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금 및 지
역자활자금의 1회 이월 사용 후 발생한 잔액 등 반영으로 「기타
수입」 금액이 당초 154백만원에서 368백만원으로 214백만원 증

가 및 융자금원금 회수수입계획 변경에 따른 「융자금회수(이자 포함)」 금액이 당초 150백만원에서 140백만원으로 1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추가 수요 재조사 결과 「민간융자금」 지출금액이 당초 430백만원에서 714백만원으로 284백만원이 증가함.

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금액이 당초 4,225백만원에서 4,279백만원으로 5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수요 재조사 결과 변동분 반영으로 정책사업비가 당초 998백만원에서 1,282백만원으로 284백만원 증가하여 28.5% 변경되었음.

라.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초 (A)	변경 (B)	증감 (C= B-A)	증감률 (C/A)
계	5,228	5,566	338	6.5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50	140	△10	△6.7
이 자 수 입	318	318	0	0
기 타 수 입	154	368	214	139.0
예치금회수	4,606	4,740	134	2.9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초 (A)	변경 (B)	증감 (C= B-A)	증감률 (C/A)
계		5,228	5,566	338	6.5
정책 사업 비	소 계	998	1,282	284	28.5
	비용자 사업	568	568	0	0
	융자성 사업	430	714	284	66.0
행정 운영 경비	기 본 경비	5	5	0	0
재무 활동 비	예치금	4,225	4,279	54	1.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혜숙)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1. 사회복지기금 및 변경계획안 개요

- 사회복지기금은 전체 4개의 계정(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주거지원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주거지원계정은 주택실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계정은 복지실에서 운용하고 있음.
- 이번에 상정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복지기금 4개의 계정 중 자활계정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의 반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¹⁾에 근거하여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2. 운영계획 변경안 세부내용 검토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²⁾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³⁾에 따라 운용 중이며,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자활계정) ① 자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전출금

조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기금조성 총괄

(단위 : 천원)

2024년도 말 조성액 ㉔	2025년도 증감액			2025년도 말 조 성액 ㉕ = ㉔ + ㉖
	계 ㉖ = ㉗ - ㉘	조성액 (수입) ㉗	사용액 (지출) ㉘	
9,308,030	△147,615	828,913	976,528	9,160,415

㉔ 2024년말 조성액(9,308,030천원) : '24년말 시금고 예치금 (4,888,030천원) + 예탁금(4,420,000천원)

㉗ 2025년 조성액(수입) : 이자수입(공공예금, 예탁금 등)+ 융자금 회수수입+ 기타수입

㉘ 2025년 사용액(지출) : 융자(전세점포 융자금)+ 비융자성(광역사업비)+ 기본경비

㉕ 2025년말 조성액(9,160,415천원) : '25회계연도 시금고 예치금(4,740,415천원) + 예탁금(4,420,000천원)

※ '25회계연도 시금고 예치금(4,740백만원) : '25.고지 의거한 '26.1.20.자 수납액 551,740원 포함(지방회계법 제7조)

- 본 계정은 2025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 가운데 예치금 회수금액이 당초 46억 6백만원에서 47억 4천만원으로 1억 3천4백만원(2,9%) 증가하게 되었고, 기타수입이 1억 5천4백만원에서 3억 6천8백만원으로 2억 1천4백만원(139%) 증가, 그리고 융자금 회수가 1억 5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계정의 자금운용 수익금

② 자활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의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에서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0.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
12.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3. 저소득 시민 자활사업 관련 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당 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

1천만원 감소하게 되었음.

- 지출계획에서는 융자성 사업을 4억 3천만원에서 7억 1천4백만원으로 2억 8천4백만원(66%) 증가시키고, 예치금을 42억 2천5백만원에서 42억 7천 9백만원으로 5천4백만원 (1.3%) 증가시켰음.

<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2026년 기금변경 조성 총괄(안)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도 말 조성액 ㉑	2026년도 증감액			2026년도말 조성액 ㉒ = ㉑ + ㉓	비 고 ('26년 12월말)
		계 ㉓ = ㉔ - ㉕	조성액 ㉔	사용액 ㉕		
당초	9,026,224	△381,112	621,549	1,002,661	8,645,112	- 시금고예치금 : 4,225,112 ('26. → '27. 이월예정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4,420,000
변경	9,160,415	△460,911	825,750	1,286,661	8,699,504	- 시금고예치금 : 4,279,504 ('26. → '27. 이월예정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4,420,000

(1) 수입계획 변경 내용

- 먼저, 수입계획에서는 기타수입의 계획의 변경에 따라 214,174천원이 증가하고, 기타이자수입 27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6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수입계획 변경내역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	당초 ㉑	변경 ㉒	증감액 (㉒ = ㉑ - ㉓) (증감률: ㉒ * 100 / ㉑)	변경사유
수입	합 계	5,227,773	5,566,165	338,392 (증 6.47%)	
	이자수입	193,910	193,937	27 (증 0.01%)	
	공공예금이자수입(206-01)	170,847	170,847	-	

구분	세부사업	당초 ㉑	변경 ㉒	증감액 (㉒=㉒- ㉑) (증감률: ㉒*100/ ㉑)	변경사유
	융자금회수이자수입 (216-02)	22,945	22,945	-	
	기타이자수입(216-03)	118	145	27 (증 22.88%)	· 민간위탁금 교부에 따른 실발생 이자(26.3.12.납부) : 변경 145천원← 당초 118천원
	기타수입	153,453	367,627	214,174 (증 139.57%)	
	그외수입(224-07)	153,453	367,627	214,174 (증 139.57%)	· 광역자활센터 과년도 집행잔액 (26.3.12.납부) : 변경 27,223천원 ← 당초 44,448천원 * 광역자활센터 집행잔액 반납처리 17,225천원 감소 ·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금 (26.3.27.환수) : 변경 220,779천원(111,774 천원↑) ← 당초 109,005천원 · 지역자활자금 1회 이월 사용 후 발생한 잔액 환수계획 : 변경 119,625천원← 당초 0 * 지역자활자금 반납처리 총 231,399천원 증가
	융자금원금수입	127,000	117,000	△10,000 (감 7.87%)	
	민간융자금회수수입 (713-01)	127,000	117,000	△10,000 (감 7.87%)	융자금 회수수입계획 변경 : · 전세점포 변경 100,000천원(3건) ← 당초 110,000천원(3건) · 매입임대 17,000천원(1건)
	예치금회수	4,606,224	4,740,415	134,191 (증 2.91%)	
	예치금회수(714-01)	4,606,224	4,740,415	134,191 (증 2.91%)	'25년 결산 반영 (시금고 잔액 변동)
	예탁금및예수금	147,186	147,186	-	
	예탁금이자수입(722-04)	147,186	147,186	-	

- 이는 전년도 광역자활센터 정산결과 등에 따라 과년도 집행잔액의 반납액이 17,255천원 감소하였고, 발생이자가 27천원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제2항에서는 자활계정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해당 계정을 재원으로 서울광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종합경영지원사업, 자활교육훈련,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자활유통 활성화,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등 비융자성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세입은 서울광역자활센터가 전년도에 수행한 자활지원의 사업의 결산 및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함에 따라 편성·수납되는 항목으로, 당초 대비 반납액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다음으로, 지역자활자금 반납처리 대상 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수입이 당초계획보다 총 231,399천원 증가하였음. 이는 참여자 인센티브 환급금인 내일키움수익금 관련 환수금 111,774천원과, 지역자활자금의 1회 이월 이후 사용 후 발생한 잔액 119,625천원을 반영한 것임.
 -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자활사업안내』에서는, 지역자활자금으로 반납처리해야 할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항목을 수입편성한 것임.

※ 지역자활자금 반납처리 (2026년 자활사업안내 p.117)

- 자활근로사업단이 해체된 경우
- 자활근로사업비, 매출액 등으로 구매한 자활근로사업단의 물품 매각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
- 지역자활자금의 1회 이월 사용 후 발생한 잔액
- 참여자 인센티브 환급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으로 발생한 잔액
- 임차보증금의 경우, 상환받은 연도 내에 한해 활성화지원금으로 사용가능하며, 사용잔액은 반납
- 2019년 9월 이전에 발생한 매출액으로 구입 후 매각, 해체, 폐업 등으로 반납하는 경우

- 이 가운데 참여자 인센티브 환급금(내일키움수익금)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가운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시 당월분에 대해 15만원 이내에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사업임.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다음으로, '26년도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당초 127,000천원에서 117,000천원으로 10,000천원 감소하였음.
- 해당수입은 지역자활사업단에 지원한 민간융자금의 상환금으로, 당초 4개 지역자활사업단을 대상으로 127,000천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광진지역자활센터의 해드림사업단이 2026년 4월 20일 만료 예정이었던 융자금 50,000천원을 25년 12월 기상환하였고, 도봉지역자활센터 주거편의사업단도 40,000천원을 2026년 3월 기상환함에 따라 회수 일정 및 금액 조정이 발생한 것임.
- 마지막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연도말 예치금의 회수가 당초보다 134,191천원 증가하면서 이를 반영함.

(2) 지출계획 변경 내용

- 집행기관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을 통해 자활종합경영 지원사업, 자활교육훈련,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자활유통 활성화,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등의 비용자성 사업과 자활기업(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등 융자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창업가능성이 높고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한 자활기업, 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
- 지원내용 :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융자조건 : 연이율 1%, 기본 2년 단위로 계약, 3회 연장 (최장 6년) 가능
- 대출 범위 : 공동체당 100백만원 이내

- 금번 지출계획 변경은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사업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초 8개소를 대상으로 430백만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총 13개소를 대상으로 714백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를 반영한 것임.

<표> '26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	당초 ㉔	변경 ㉕	증감액 (㉕=㉔- ㉖) (증감률: ㉕*100/ ㉔)	변경사유
지출	합 계	5,227,773	5,566,165	338,392 (증 6.47%)	
	저소득시민 자활정책 지원	997,661	1,281,661	284,000 (증 28.47%)	
	비용자성 사업	567,661	567,661		
	자활종합경영지원사업	80,000	80,000		
	민간위탁금(307-05)	80,000	80,000		
	자활교육훈련	111,760	111,760		
	민간위탁금(307-05)	111,760	111,760		
	광역자활사업육성및지원	262,051	262,051		
	민간위탁금(307-05)	262,051	262,051		
	자활유통활성화	53,250	53,250		
	민간위탁금(307-05)	53,250	53,250		
	자활조사,홍보 및 연대사업	60,600	60,600		
	민간위탁금(307-05)	60,600	60,600		
	융자성사업	430,000	714,000	284,000 (증 66.05%)	

구분	세부사업	당초 ㉔	변경 ㉕	증감액 (㉕=㉔- ㉖) (증감률: ㉕*100/ ㉖)	변경사유
	전세점포임대자금 융자지원	430,000	714,000	284,000 (증 66.05%)	
	민간융자금(501-01)	430,000	714,000	284,000 (증 66.05%)	· 전세점포 융자금 수요조사 결과 변동분 반영 : 변경 714백만원(13개소) ← 당초 430백만원(8개소)
	재무활동(예치금 및 예탁금)	4,225,112	4,279,504	54,392 (증 1.29%)	
	여유자금예치	4,225,112	4,279,504	54,392 (증 1.29%)	
	일반예치금(602-01)	4,225,112	4,279,504	54,392 (증 1.29%)	'25.회계연도 결산 및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증가 (26년말 시금고 잔액 예정)
	행정운영경비	5,000	5,000		
	기금관리비	5,000	5,000		
	사무관리비(201-01)	5,000	5,000		

- 또한, 이 외에도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재원 변동을 반영하여 연도말 예치금을 54,392천원 증액 반영한 것임.

3. 종합의견

-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광역자활센터 수행사업 정산결과, 지역자활자금 반납처리 대상 금액 처리, 민간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회수시점 조정 등에 따른 수입계획의 변경과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 사업 수요증가에 따른 지출계획의 변경으로, 실제 자금의 흐름과 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임.
- 이 가운데 정책사업비인 전세점포 융자지원사업이 284백만원(28.47%) 증액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타당하다 하겠음.

- 다만, 변경계획 가운데 참여자 인센티브 환급금인 내일키움수익금 환급금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내일키움수익금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유인 제고 및 자립지원과 관련된 자원이라는 점에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해당 환급금은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24년부터 자활자금에 포함되어오고 있어 아직 추이를 분석하기에는 기간상의 한계가 존재함. 그러나, 향후 지속적으로 해당 환급금이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중도해지 등 참여자의 자립경로 이탈로 이어질 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안정적인 공간 확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원 규모가 확대된 만큼 대상 선정의 적정성, 융자금 상환 관리, 사업장 운영 지속성 등에 대한 사후점검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도미화	02-2180-8147